

보도시점 : 2026. 7. 9.(목) 06:00 이후(7. 9.(목) 석간) / 배포 : 2026. 7. 8.(수)

경부선 청도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에 과징금 부과

- 한국철도공사 3건 10.2억 원, (주)에스알 2건 8.4억 원 등 18.6억원 부과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7월 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 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고속선 SRT열차 부품 탈락사고('24.10.20.),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('25.2.16.), 경부선 청도~남성현 작업자 사상사고('25.8.19.),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2건 등 총 5건에 대해 18억 6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.

* 한국철도공사 3건 10.2억 원, (주)에스알 2건 8.4억 원

-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도운영기관의 「철도안전법」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경부고속선 SRT열차 동력전달장치 탈락사고('24년 10월 20일)

- '24.10.20.(일) 18:40경 경부고속선(하선) SRT열차가 천안아산역 진입 중 동력전달장치 트리포드(Tripod: 모터의 회전을 차륜에 전달하는 장치) 탈락으로 약 49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.
- 이는 (주)에스알의 「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규정」 제9조*를 위반한 것으로, 「철도안전법」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 20억원 이상(참고)에 해당하여 (주)에스알에 7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.

* 철도차량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철도차량을 정비하고 운행

②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('25년 2월 16일)

- '25.2.16.(일) 21:22경 동해선 근덕역에서 작업자가 차량하부에서 전철 모터카의 차량 신호장치를 정비하던 중 제동이 풀리는 고장에 의해 미끄러진 차량에 협착하여 작업자 1명이 사망하였다.
-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「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」 제36조*(작업계획서 작성), 「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」 제36조**(고속화구간 선로출입 제한) 등을 위반한 것으로,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(참고)에 해당하여 한국철도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.

* 관리감독자는 작업 시행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
** 고속화구간 선로는 출입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음

③ 경부선 청도~남성현 작업자 사망사고('25년 8월 19일)

- '25.8.19.(화) 10:49경 안전점검 용역 작업자 등 7명이 경부선 청도~남성현 부근 선로로 이동 중 무궁화열차와 접촉하여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·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.
- 이는 한국철도공사 「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」 별표1의2*(상례작업 세부사항)를 위반한 것으로,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(참고)에 해당하는 과징금 3억 6천만원에 가중(2분의1 범위 내 가능)하여 한국철도공사에 5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.

* 위험지역 내 선로 이동 시에는 열차를 바라보고(대향방향), 선로 외측으로 순회

④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(2건)

- 철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규정한 유지관리 항목을 축소하거나 부품의 정비 주기를 증가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, 한국철도공사와 (주)에스알은 이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.

* (한국철도공사) 주기증가 44건, 항목삭제 177건 / (주)에스알) 주기증가 44건, 주기연장 15건

○ 이는 「철도안전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* 위반에 해당하여 한국철도공사 및 (주)에스알에 각각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.

* 철도운영자는 유지관리 주기의 증가 및 유지관리 항목의 축소, 철도차량이 증가 될 경우에는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

□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“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, 불법 차량개조, 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철도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,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동익 (044-201-4600)
		담당자	서기관	우지훈 (044-201-4616)
		담당자	주무관	임병일 (044-201-4630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: TOMORROW

□ 제도개요

- 철도운영기관이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지 못하여 일정규모 이상 피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「철도안전법」 제9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부과
 - (안전관리체계)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갖추어야 하는 인력·시설·차량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인 체계
 -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수칙 위반 시 안전관리체계 유지 위반으로 간주

□ 부과 기준 (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1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징금 금액(백만원)	비고
가.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1) 1차 위반	법 제9조 제1항 제2호	120	④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관련
다.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1)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가) 1명 이상 3명 미만	법 제9조 제1항 제3호	360	②,③ 근덕역 및 청도~남성현 작업자 사망사고 관련
다.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)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 다) 20억원 이상	법 제9조 제1항 제3호	720	① SRT열차 동력전달 장치 탈락사고 관련